

의안번호	2210913
의 퇴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5.7.15.
추계번호	25C328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하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0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과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각각 “10만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1.0조원 (연평균 12.2조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제1항)	13.1	12.7	12.2	11.7	11.2	61.0	12.2
－ 국비	10.0	9.7	9.3	8.9	8.5	46.5	9.3
－ 지방비	3.1	3.0	2.9	2.8	2.7	14.5	2.9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함	의무규정
		(제6항) 주소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아동에게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에 추가로 지급함 1. 0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 10만원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5만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제1항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표 2] 만 0~17세 아동 수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	217,079	227,833	237,996	247,279	255,406
1세	216,540	216,413	227,121	237,221	246,446
2세	228,264	216,576	216,460	227,149	237,220
3세	243,386	228,286	216,626	216,522	227,200
4세	257,800	243,177	228,108	216,474	216,382
5세	272,427	257,384	242,792	227,754	216,148
6세	291,972	272,005	256,994	242,429	227,418
7세	318,501	291,693	271,762	256,778	242,234
8세	345,655	318,279	291,511	271,613	256,655
9세	382,903	345,387	318,058	291,330	271,466
10세	426,157	382,531	345,080	317,803	291,118
11세	438,270	426,073	382,485	345,064	317,808
12세	430,991	438,590	426,396	382,807	345,379
13세	458,810	431,039	438,655	426,458	382,872
14세	467,496	458,491	430,745	438,375	426,182
15세	475,424	466,846	457,862	430,149	437,811
16세	439,377	475,057	466,483	457,516	429,847
17세	447,266	440,424	476,086	467,540	458,576
합 계	6,358,318	6,136,084	5,931,220	5,700,261	5,486,168

주: 「장래인구추계」(2023.12.) 중위시나리오

자료: 통계청

- 개정안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¹⁾에 따른 지역으로 현재 총 89개의 시·군·구가 지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2024) 자료를 준용하여 해당 지역 아동 수의 최근 3년간 추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시·군·구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표 4] 인구감소지역의 만 0~17세 아동 수

(단위: 명)

	2022년 12월말	2023년 12월말	2024년 12월말
부산(3)	28,029	27,726	26,425
대구(3)	27,467	27,706	27,016
인천(2)	8,238	7,800	7,391
경기(2)	10,971	10,476	10,030
강원(12)	50,830	48,360	46,151
충북(6)	33,264	31,753	30,185
충남(9)	67,245	64,442	61,246
전북(10)	52,403	50,151	47,851
전남(16)	69,265	66,251	63,479
경북(15)	86,811	83,477	79,228
경남(11)	55,382	52,628	49,982
합 계	489,905	470,770	448,984

자료: 행정안전부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현행 아동수당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동수당(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지출증가분임
 - 지급 대상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0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과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각각 10만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18세 미만 아동 수에 월 20만원의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0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은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5만원을 추가로 더하여 산출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으로 현재 총 89개의 시·군·구이며, 해당 지역의 아동 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준용하여 산출
 -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2024) 자료를 준용하여 해당 지역 아동 수의 최근 3년간 추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총 72조 4,000억원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아동 수(명, A)	6,358,318	6,136,084	5,931,220	5,700,261	5,486,168	29,612,051	5,922,410
단가(만원, B)	20	20	20	20	20	-	-
지원기간(개월, C)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 D)	99.6	99.6	99.6	99.6	99.6	-	-
소 계(조원, E=A×B×C×D)	15.2	14.7	14.2	13.6	13.1	70.8	14.2
인구감소지역의 만 0~7세 아동 수(명, F)	129,029	124,827	121,274	118,196	115,481	608,807	121,761
단가(만원, G)	10	10	10	10	10	-	-
지원기간(개월, H)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 I)	99.6	99.6	99.6	99.6	99.6	-	-
소 계(조원, J=F×G×H×I)	0.15	0.15	0.14	0.14	0.14	0.72	0.14
인구감소지역의 만 8~17세 아동 수(명, K)	304,206	301,807	299,778	298,020	296,470	1,500,281	300,056
단가(만원, L)	5	5	5	5	5	-	-
지원기간(개월, M)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 N)	99.6	99.6	99.6	99.6	99.6	-	-
소 계(조원, O=K×L×M×N)	0.18	0.18	0.18	0.18	0.18	0.9	0.18
합 계(조원, P=E+J+O)	15.5	15.0	14.5	13.9	13.4	72.4	14.5
- 국비	11.8	11.4	11.1	10.6	10.2	55.2	11.1
- 지방비	3.7	3.6	3.4	3.3	3.2	17.2	3.4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5년간 총 11.4조원으로 추계

[표 6]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급 대상자 수(명, A)	2,045,969	1,953,367	1,897,859	1,871,606	1,868,454	9,637,255	1,927,451
월 지급액(만원, B)	10	10	10	10	10	-	-
지원개월 수(개월, C)	12	12	12	12	12	-	-
집행계수(%, D)	99.6	99.6	99.6	99.6	99.6	-	-
합 계(조원, E=A×B×C×D)	2.4	2.3	2.3	2.2	2.2	11.4	2.3
- 국비	1.8	1.8	1.8	1.7	1.7	8.7	1.7
- 지방비	0.6	0.5	0.5	0.5	0.5	2.7	0.5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1.0조원(연평균 12.2조원)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A)	15.5	15.0	14.5	13.9	13.4	72.4	14.5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B)	2.4	2.3	2.3	2.2	2.2	11.4	2.3
추가재정소요(C=A-B)	13.1	12.7	12.2	11.7	11.2	61.0	12.2
- 국비	10.0	9.7	9.3	8.9	8.5	46.5	9.3
- 지방비	3.1	3.0	2.9	2.8	2.7	14.5	2.9

주: 1) 현행 사업의 국고보조율(76.3%)과 아동수당 집행계수(99.6%)는 2025년 기준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assembly.go.kr